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 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

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증 장려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양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원외처방전 발급비용
3.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양주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5. 양주시 나리농원 입장료
6. 양주시립미술관 및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관람료
7. 관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 면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

소 관		양주시의회
입 안 자	직위·성명	정현호 의원 (대표발의)